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 기탁신청서

기부자명 (기관명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※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: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2항(영수증발행)		
주 소			
휴대전화		이 메 일	
지정대상	☐ 와부읍 ☐ 진접읍 ☐ 화도읍 ☐ 진건읍 ☐ 오남읍 ☐ 퇴계원읍 ☐ 별내면 ☐ 수동면 ☐ 조안면 ☐ 호평동 ☐ 평내동 ☐ 금곡동 ☐ 양정동 ☐ 다산1동 ☐ 다산2동 ☐ 별내동		

☞ 안내사항)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1.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2.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3.기타 지정내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회규에 위배되는 경우

정기기부	월 이체금액		☐ 30,000원 ☐ 20,000원 ☐ 10,000원 ☐ 5,000원 ☐ 기타(원)		
	출금계좌	은 행 명		계좌번호	
		예금주명		예금주 생년월일	
		예금주와의 관계		이 체 일	☐ 10일 ☐ 25일
일시기부	기부금액	금 원		입금자명	
	입금계좌 안내	농협 301-0199-5889-51 (복)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		입금예정일	20 년 월 일

【 개인정보 수집 ·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】

사회복지공동모금회(이하 "모금회"라 함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,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· 제공되지 않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

항 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(필수)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주소, e-mail (선택) 기부금결제정보(CMS출금계좌, 카드) 등	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관련 업무 (기부신청, 기부내역확인, 확인서 발급, 기부자서비스 등)	마지막 기부시점 이후 5년

☞ 위의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 및 이력 확인, 기부자서비스 등 기부관련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1-1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· 이용

제공받는 곳	항 목	제공목적	제공기간
금융결제원, 이니시스, 해당은행	(CMS)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, 생년월일 (카드)카드명, 카드번호, 유효기간, 소유주, 생년월일	기부금 결제	기부금 결제 중단시 까지

☞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, 기부금 결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.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 수집 · 이용

항 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	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발급	5년(소득세법에 의해 가능한 5년)

☞ 위의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-1.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 제3자 제공 · 이용

제공받는 곳	항 목	제공목적	제공기간
국세청	이름, 주민등록번호, 기부일자, 기부금액	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	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 까지

☞ 위의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 제3자 제공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콜센터 상담이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3.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

법정대리인 성명	법정대리인 연락처	정보주체와의 관계
(인)		

·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.
· 본사(본인)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, 기부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귀회 회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 기부자(명칭/성명) (인)

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중

※ 근거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)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(기부금품의 모집), 소득세법 제160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),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)